

	등록번호	20120500064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최초등록일	2012-11-12	http://sulhwa.ofood.co.kr
	최종등록일	2024-09-26	shelhwa@naver.com

설화 참숯닭갈비

정보공개서

다원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다원푸드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정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 5 길 14,1 층

TEL : 043-260-2592 FAX : 043-288-2592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043-260-259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및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최근 3 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4. 최근 3 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5. 기타 가맹사업 현황
6.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8. 가맹점의 평균영업기간
9. 광고·판촉지출 내역
10. 가맹금 예치기관
11.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신용 제공 등 내역
4.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5. 영업지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정보마당'-'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법령 및 제도'-'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중인 경우에는 실제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다원푸드	설화참숯닭갈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 5길 14, 1 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전화번호 및 팩스
	개인사업자	2016,04,6	김설화	T. 043-260-2592 F. 043-288-2592
	법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280-13-0023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서 바로전 3 년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설화참숯닭갈비』 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다원푸드	없 음
상 호	설화참숯닭갈비 OO 점	없 음

상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그 밖의 영업표지		4009725030000 (2013.06.03)

5. 바로전 3 개 사업연도 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전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21,386	1,408	19,978	134,788	19,978	19,978
2022	21,698	4,632	17,066	222,036	32,993	33,087
2023	23,344	2,988	20,356	177,919	20,318	20,356

2) 당사의 바로전 3 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은 모두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체명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설화	대표	2013.11.5~ 2016년 4월 5일	설화유통	프랜차이즈 사업총괄
			2016년 4월 6일- 현재	다원푸드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관리내용	등록 및 등 록신청 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간판, 인터넷 서설물 및 판촉.홍보	출원일 2011.12.22 등록일 2013.06.03	출원번호 4020110072362 등록번호 4009725030000	정두기	2033.6.3

*지식재산권 서비스표(설화참숯닭갈비)를 소유자 정 두기 로부터 지식재산권 등록일로 부터
지식재산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별첨 : 지식재산권의 사용 승낙서)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설화참숯닭갈비』 가맹사업 현황

1. 『설화참숯닭갈비』 을 시작한 날 : 2016 년 4 월 6 일

2. 『설화참숯닭갈비』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화참숯 닭갈비	설화참숯 닭갈비	정두기	2011.12.16~ 2013.11.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231 (북대동,1 층)
설화유통		김설화	2013. 11.5,- 2016.4.5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옥산시내 1 길 3-13
다원푸드			2016.4.6- 2019.04.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주역로 666
			2019.04.03 현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오산 5 길 14, 1 층

3. 『설화참숯닭갈비』 업종

영업표지	업종	
설화참숯닭갈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닭갈비

4. 바로전 3 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설화참숯닭갈비』 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 점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5	5		5	5		4	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	1		1	1		1	1	
울산									
경기									
강원									
충북	4	4		4	4		3	3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전 3 개년도 말 『설화참숯닭갈비』의 가맹점수

당사의 바로전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6	0	0	1	0	5
2022	5	0	0	0	0	5
2023	5	0	0	1	1	4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설화참숯닭갈비』가맹사업 외 현재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타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지역별 연간평균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금액 사이에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 말 가맹점 수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상한)		연간평균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3.3 ㎡ 당	상한	3.3 ㎡ 당	하한	3.3 ㎡ 당	
전체	4	136,149	5,020	168,381	6,461	105,420	3,87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							5 곳미만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3							5 곳미만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은 가맹점별 POS 금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전 사업년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	-----------	---------

2023년12월31일	4	2,141일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 년에 설화참숯닭갈비 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충북대개신골)	개인금융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1631	1588-9999 043-271-819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금액을 당사에서 교부한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맹계약후 다음날까지 예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시어 예치가맹금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장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bank.kbstar.com>)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1588-9999)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설화참숯닭갈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개점 전 교육비	2,200	계약체결시	교육시작 3일 이전에 계약해지시	교육개시후	1인기준으로 추가1인마다 2,200천원 추가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	----	-------	-----------------	----

계약이행 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계약체결일 [보증보험증권 대체가능]	계약위반등 계약미이행,	계약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채 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물품보증 금	₩3,000 (부가세 없음)	계약체결일 [보증보험증권 대체가능]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 보증금은 귀하가 당사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이행담보목적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변경 사용 할 수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예치가맹금액
합계	₩ 7,200
가맹비	없음
교육비	₩2,200
개점행사비	없음
보증금	₩5,0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금전 지급방법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	------	----	--------------	----------	----------	----

[총 계]	-	[81,950]	2,049	-	-	132㎡ 기준 (40평)
간판 및 인테리어	가맹점사 업자가 지 정한 업체	52,800	1,320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자재구매전계약해 지시	
주방설비		11,000	275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홀설비		13,200	330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주방집기		3,850	97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초도물품	가맹본부	1,100	28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전계약해 지시	
POS 설비	가맹점사 업자가 지 정한 업체	무상임대		설치업체와 협의결정	설치업체와 협의결정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간판은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간판 및 인테리어 비용은 3.3㎡ 당 대략 132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되었으며 매장 규모 및 상황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OS 시스템의 경우 POS 설치비용은 가맹계약체결시 당사의 지정업체를 통해 무상으로 임대지원합니다. 다만, 주방 프린터는 별도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며 POS 사용량에 따라 월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철거공사, 전기승압, 출입문, 외부공사, 어닝공사, 돌출간판, 냉난방기, 영상공사(TV,프로젝트), 닥트외부공사, 석쇠세척기, 초벌기 등은 별도로 실비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귀하는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의 설비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당사에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의 승인 하에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귀하는 당사가 파견하는 직원의 감리(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며, 이의 비용으로 당사에 3.3㎡당 11만원(부가세 포함)의 검수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가)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정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내	100 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후 10 일 이내	200 만원
계약 체결 후 10 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300 만원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실제 발생비용 전액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설화참숯닭갈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110]	익월 5 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월에 대한 대가
영업표지 간판변경비	가맹점주 가 지정한 업체	[52,800] 인테리어 (간판포함)	시공업체 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
인테리어 시설,기기 교체보수비		[24,200] 주방설비등 [13,200] 출설비등	시공업체 및 공급업 체와 협의	시공업체및 공급업체와 협의	시공업체및 공급업체와 협의	교체. 보수 필요시 내 구연수 등 감안협의
점포환경개 선비용		가맹본부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9 페이지 참조
개점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기본교육 무료, 특수사항 실비	교육 실시 7 일 전	교육 실시 3 일 전 취소	교육후 반 환되지 않 음	수시교육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 산정	교육실시 7 일 전	교육 실시 1 일 전 취소	교육후 반환되지 않음	특별교육
광고 분담비		광고성격별 분담비율차등	광고실시 2 주 전	광고 실시 1 주 전 취소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판촉 분담금		판촉 진행 총비용100%중 귀하분담분	명세서 수령 후 2주 이내	반환 안됨	판촉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간 분담은 균등
POS 사용료	가맹점주가 지정한 업체	[0 ~ 40] (사용량에 따라 변동)	지정업체와 협의	해당사항 없음	사용 대가 지급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금전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 리스료, 재고관리비용, 회계처리비용, 영업지역보장금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광고 및 판촉분담비에 관하여는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중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

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

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서비스상태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재재고수량조사,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부정기	문의 043-263- 2592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 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 년 1 회이상 및 요청시	문의 043-263- 2592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갱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재계약 180일에서 90일전 귀하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설화참숯닭갈비』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설화참숯닭갈비』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운영에 관한 관계서류와 지원품목등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② 전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품의 특성상 유통기간 및 부패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설화참숯닭갈비』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원부재료중 양념 소스류, 각종육류 등은 반드시 가맹본부(협력업체 포함)에서 공급받아야 하며 야채 종류(상추, 깻잎, 고추, 마늘 등)는 신선도 문제로 인하여 점주님께서 직접 조달하고 기타 나머지 품목에 관하여는 당사와 협의 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숯불닭갈비 숯불돼지갈비 양념닭발 스페셜모래주머니 회성양념더덕 쟁반막국수(대/중) 냉면, 소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설화참숯닭갈비의 타 가맹점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왼쪽에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후 가 맹점운영권 제한 3 회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 은 경우에 는 제외

2)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체결시와 가격변동시 제공메뉴별 판매가격표를 교부합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설화참숯닭갈비”가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	“설화참숯닭갈비”	해당없음

3)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동선거리 1Km 의 범위를 원 칙으로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영업지역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인하여해당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가맹계약 만료 180일~90일 사이에 영업지역 조정 통보→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경우 가맹계약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개시일에 영업지역 재조정완료 (신규점포 입점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

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전 사업년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가맹점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전 사업년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 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해지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설화참숯닭갈비』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갱신시에는 2 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1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 후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3 항	25 조 각호 및 31 조 1 항 2 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 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의 명의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한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3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1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31조 4항 각호1

신용을 두렸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서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두렸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①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②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③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의 규정내용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두렸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1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2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1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 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43-263-2592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서면으로 승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대리행사	불가능	-	-	-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위탁 승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토(위탁자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중에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설화참숯닭갈비』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제한지역	경업허가절차
계약기간 중	『설화참숯닭갈비』와 동일	국내 전지역	해당사항없음

	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 하는 닭갈비전문점		(문의 043-263-2592)
--	-----------------------------	--	-------------------

-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설화참숯닭갈비』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설화참숯닭갈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6:00 ~ 익일 02:00 (10시간)	월 26일 이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9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 명 이상 [132㎡ 기준]	직접 근무 권장	제한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시 매장을 방문하여 청결도, 물품의 사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의 조건과 비용부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설화참숯닭갈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 담 비 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행사 계획 공 고 → 광고실 시 1개월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전체 광 고행사에 참여하여야 함
	상품광고 + 가맹점 모 집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 점의 행사 참 여 결정 → 광 고실시 2주전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까지 광고비 납부	
판촉 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디자인시안제작비용은 가맹본부, 판촉물제작 소요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원칙)			별도 절차 없음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경품 및 이 벤트

-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당사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이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의 월평균 물품공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text{산출금} = \text{계약해지직전 1년간 당사의 월평균공급액} \times 0.2 \times \text{잔여개월수}]$$
- ② 가맹점사업자는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 자점매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당 20만원을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배상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 또는 당사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 일 내외	약 93,85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43-263-2592)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5	[132㎡기준]
1 차 상담	- 전화 상담 - 본사방문 상담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10 곳이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D-44	IV.가맹점사업 자의부담중 영 업개시 이전부 담 금전 지급 방법 참조
점포 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	

점포실측/ 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8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7~2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17~3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상호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설화참숯닭 갈비” 부담비 용 항목	“설화참숯닭 갈비” 부담비 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 외사유	비고
o.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o.간판교체 비용 o.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o.점포의 확장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90 일	o.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이내에 “설화참숯닭갈비”의 책임없는사유로 계약이 종료	

o.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이내에“설화 참숯닭갈비”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설화참숯닭갈비”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o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첨부)→3 차에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설화참숯닭갈비”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	--	-----------------------------------	--	---	--

			걸쳐 “설화참숯닭갈비” 부담액을 분할 지급(1 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 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 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등 내용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을 하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설화참숯닭갈비” 자문사에 의뢰하여 줍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신용 제공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신용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돕기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설화참숯닭갈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조리교육	각종 메뉴의 조리 교육, 주방관리, 위생교육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	필수 교육
서비스 및 운영 교육	접객방법, 마인드 교육, 위생교육, 매장운영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설화참숯닭갈비』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교육시간	비고
----	------	------	------	----

수시교육	신메뉴 및 필요시 전달교육등	실습교육	1 일(3~6h)	신메뉴출시 및 필요 시
특별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강의교육	1 일(3~6h)	가맹점주 요청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설화참숯닭갈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VAT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14 일 (40h~50h)	무료	최초 계약시 이수 (1 일 4 시간 교육기준)
수시 교육	1 일(3~6h)	기본이론교육무료 실비 발생시 청구	신메뉴 및 필요시등
특별 교육	1 일(3~6h)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관리자 등)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	--	--

☞ 해당사항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직전년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 해당사항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바로전 사업년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해당사항없음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43-263-2592) 또는 당사자문가맹거래사(010-3740-677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2 월말 설화참숯닭갈비 가맹점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비밀유지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